

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
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1479-1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0. 8. .

제 출 자: 복지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조례 제정 후 사업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, 조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본래의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문을 보다 간결하고 명료하게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(1) 안 제3조제1항을 제4조로 하고,
- (2) 안 제3조제2항을 제3조로 하되, 제3조의 제목을 “적용범위”로 하고,
- (3) 안 제6조제1항 중 “「치매관리법」에 따른 치매환자”를 “「치매관리법」에 따른 치매환자성동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신설하고,
- (4)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.

나. 종전의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(1) 종전의 안 제9조를 삭제하고, 안 제6조제3항으로 한다.

(2) 제6조제3항(종전의 안 제9조) 본문 중 조문 앞부분에 “보조금과
관련하여”를 추가하여 “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”로 하고,

다. 안 제10조 본문 중 “정할 수 있다”를 “정한다”로 수정하고,

라. 안 부칙 중 “공포한 날”을 “2021년 1월 1일”로 한다.

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중
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1항을 제4조로 하고, 안 제3조제2항을 제3조로 하고 제목을
“적용범위”로 한다.

안 제6조제1항 중 “「치매관리법」에 따른 치매환자”를 “「치매관리법」
에 따른 치매환자로 성동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”로 하고, 같은 조
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
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.

중전의 안 제9조를 삭제하고, 안 제6조3항으로 하고 본문 중 조문 앞부분에
“보조금과 관련하여”를 추가하여 “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”로 한다.

안 제10조 본문 중 “정할 수 있다”를 “정한다”로 수정한다.

안 부칙 중 “공포한 날”을 ”2021년 1월 1일“로 한다.

제정안과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<u>제3조(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) ①</u> (생략)</p> <p>②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주민 및 「치매관리법」에 따른 치매환자로 한다.</p> <p><u>제4조(지원대상자 선정)①</u>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<u>제5조(보조금 지원범위) ①</u>구청장은 <u>제4조</u>에 따른 ----- -----</p> <p>1. 「치매관리법」에 따른 치매환자</p> <p>2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<u>제6조(보조금 신청 방법)</u> (생략)</p> <p><u>제7조(감독 등)</u> (생략)</p> <p><u>제8조(환수조치)</u> (생략)</p> <p><u>제9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</u> <삭제>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</p>	<p><u>제4조(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)</u>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<u>제3조(적용범위)</u>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주민 및 「치매관리법」에 따른 치매환자로 한다.</p> <p><u>제5조(지원대상자 선정)①</u>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<u>제6조(보조금 지원범위) ①</u> 구청장은 <u>제3조</u>에 따른 ----- -----</p> <p>1. 「치매관리법」에 따른 치매환자로 <u>성동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</u></p> <p>2.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<u>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</u></p> <p><u>제7조(보조금 신청 방법)</u>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<u>제8조(감독 등)</u>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<u>제9조(환수조치)</u>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<u>제6조(보조금의 지원범위) ③</u> <u>보조금과 관련하여</u> ----- -----</p>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-----
----- 정한다.

부 칙

----- 2021년 1월 1일-----